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홍지광 의원)

의안 번호	23-102
----------	--------

발의년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김승수, 남해석, 백남환,
신종갑, 오욱자, 이한동,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홍지광

1. 제정이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 다. 기본계획 및 생활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생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
- 마.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안 제12조)
- 바. 위탁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 사.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7조, 제8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붙임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8. 22. ~ 8.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지원 및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
2.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
4.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이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 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 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문화 지원 혹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시설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희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6조(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제6조(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③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시설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전형준
연 락 처	02-3153-8356